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55 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 : 김 건 · 김정재 · 김태호

윤재옥 • 유용원 • 이헌승

서일준 · 강선영 · 박상웅

최보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(이하 "공관"이라 함)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, 외교 및 영사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,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,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협의체 운영)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·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협의체 운영) ① 제5조
	제1항에 따른 공관장은 관할
	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
	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・법
	인・단체 등의 원활한 국제협
	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
	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<u>있</u>
	<u>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
	<u>직·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</u>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 정한다.</u>